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2. 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11.23. 강희향 의원 외13명
- 나. 회부일자 : 2017.11.24.
- 다. 상정일자 :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(2017.12.5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서종수 의원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·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「국민체육진흥법」 등 상위법에 따라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2) 장애인체육 장려를 위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
3)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 규정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은 2017년 11월 23일 강희향 의원의 대표발의 및 13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, 11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○ 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제2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하려는 것임.

○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제2항에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” 고 하였고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에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,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,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” 고 규정되어 있는바,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·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